의	안 번	호	제	ই
의		결	2023.	
연	월	일	(제	회)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3. 11. 17.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호

제출연월일: 2023. 11. 17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과·사업소의 신설, 폐지, 분리, 명칭변경

1) 신 설: 관광진흥과

2) 폐 지: 관광지사업소

3) 분 리: 문화관광과 ⇒ 문화예술과 + 관광진흥과

4) 명칭변경: 문화관광과 ⇒ 문화예술과

나. 본청 문화환경국내 부서 신설 및 소관사무 (안 제5조의2)

다. 사업소 소관사무 (안 제15조)

라.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(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해당사항 없음: 복지지원과-41689(2023. 10. 31.)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552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 ~ 11. 01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특이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 · 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"문화관광과"를 "문화예술과, 관광진홍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문화재,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, 해양치유"를 "문화유산관리, 문화유산정책, 박물관 운영 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관광정책, 생태관광,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, 해양관광, 당항포관 광지 등에 관한 관리·운영 사항"

제15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부서 통폐합·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 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·신설 및 기능 재배 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문화환경국(문화예술과, 관광진흥과, 스포츠산업과, 환경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.

②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"문화관광과장"을 "문화예술과장"으로 한다.

③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"문화관광과장"을 "문화예술과장"으로 한다.

④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1호 중 "문화관광과"를 "관광진흥과장"로 한다.

⑤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문화관광과장"을 "관광진흥과장"으로 한다.

⑥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
제11조제3항 중 "관광지사업소장"을 "관광진흥과장"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혉 햀 개 정 아 제5조의2(문화환경국) ① 문화환 제5조의2(문화환경국) ① -----경국에 문화관광과, 스포츠산업 ---- 문화예술과, 관광진흥과-과, 환경과, 해양수산과, 녹지공 워과를 둔다.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② -----관장하다. 1.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·산업. 1. ------문화재,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 문화유산관리, 문화유산정책, 조성, 해양치유에 관한 사항 박물관 운영 등----<신 설> 2. 관광정책, 생태관광,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, 해양관광, 당항포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 ·운영 사항 3. ~ 6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 2. ~ 5. (생략) 까지와 같음) 제15조(소관사무) 사업소 소장은 제15조(소관사무) ------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관광지사업소 <삭 제> 가. 관광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나. 엑스포주제관 및 엑스포 관련 시설물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다. 그 밖에 엑스포 업무지원 에 관한 사항 <u>2</u>. · <u>3</u>. (생 략) 1. •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-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[별표 2] (현 행)
- 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(제13조제2항 관련)

사 업 소 명	위 치
관광지사업소	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
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	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
상하수도사업소	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

-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[별표 2] <mark>(개정안</mark>)
- 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(제13조제2항 관련)

사 업 소 명	위 치
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	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
상하수도사업소	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

불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「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직을 기능적 재배치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

작성자: 행정과장 최 낙 창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27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8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9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

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이 공항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1조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.

제132조(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시장이 임명한다.

② 읍장 • 면장 • 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시장 • 군수 또

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.

제133조(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)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, 읍장 · 면장은 시장이나 군수, 동장은 시장(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)이나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)의 지휘 ·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

제134조(하부행정기구)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 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8. 2. 20.>
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9., 2020. 3. 10.>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